

2024년 제2회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4년 제2회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3. 4.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 업무
감사관실	감사행정 수행·지원	지방행정사무관 (일반 임기제)	1명	임용일 ~ 2년 (기간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 시 전문성 확보사전 컨설팅 감사 및 감사처분요구 재심의 시 행정의 합법성 확보
건강증진과	공공보건 의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8급상당)	1명	임용일 ~ 1년 (기간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공공보건의료자원단 예산집행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
여순사건 지원단	사실조사 전문요원 (가 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35시간, 5급상당)	1명	임용일 ~ 1년 (기간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여순사건 사실조사 연속적 추진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확충 운영
	사실조사 전문요원 (나 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35시간, 6급상당)	2명	임용일 ~ 1년 (기간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료 수집·분석 및 진상규명 조사활동 등 경험있는 전문가를 채용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 업무
동물위생시험소	도축검사	지방수의주사보 (일반임기제)	3명	임용일 ~ 2년 (기간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의 도살·처리 및 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필요

- ※ 일반임기제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연장 검토(총 5년 범위)
- ※ 시간선택제 임용기간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1년 추가 연장 가능
- ※ 직제·기구가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 국 적 : 대한민국(외국인이 아닌자)

나.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감사행정 수행·지원 (일반임기제, 5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법」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p>(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사법연수원 연수 기간 제외) ※ 경력사항 적용 기준일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적용하며, 전임 외의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 적용
공공보건의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대학·연구소·공공병원·민간병원에서 보건의료 관련 업무 또는 연구경력 <p>(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전공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SAS, SPSS, R 등의 통계 프로그래밍 가능한 사람 - 행정, 예산업무 근무 경력자 <p>* 전공분야 : 의학, 약학, 보건학, 간호학, 보건경제학, 보건경영학, 보건행정학, 사회학, 보건통계학, 기타 보건의료 관련 분야</p>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사실조사 전문요원(가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과거사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서 <u>역사, 조사·수사·감사, 언론, 법무, 인권, 노동, 사회 등</u>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 및 사실조사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p> <p>(우대사항) 여순사건 및 과거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p> <p>* 관련학과 : 정치, 사회, 역사, 법, 수사, 행정학 또는 이와 관련 계통의 학</p>
사실조사 전문요원(나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과거사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서 <u>역사, 조사·수사·감사, 언론, 법무, 인권, 노동, 사회 등</u>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 및 사실조사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p> <p>(우대사항) 여순사건 및 과거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p> <p>* 관련학과 : 정치, 사회, 역사, 법, 수사, 행정학 또는 이와 관련 계통의 학</p>
도축검사 (일반임기제, 7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p>(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여야 함**(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3. 근거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보수수준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아래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 시간선택제는 임기제공무원의 해당직급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주당 35시간)하여 책정

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5급 (상당)	-	65,346
일반임기제 7급 (상당)	66,396	47,157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	57,178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71,084	47,366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50,967	36,358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채 점 기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우 대 사 항	장기근무 경험자, 관련학위 및 자격증 보유자 등 우대 (분야별 우대요건 참고)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할 때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24. 3. 4.(월) ~ 3. 14.(목)	'24. 3. 11.(월) ~ 3. 14.(목)	서류전형	'24. 3. 22.(금)	'24. 3. 26.(화)
		면접시험	'24. 4. 2.(화) ~ 4. 3.(수)	'24. 4. 25.(목)

※ 합격자 발표: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 게시

※ 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별지1~10호(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 처: 전라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061-286-3372)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접수 권장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전라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는 제출서류와 동봉

※ 응시원서는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서류합격 시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

7.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 3.5cm×4.5cm) 1매
- 응시수수료 : 1만원(5급 이상), 7천원(6~7급, 지도사, 연구사), 5천원(8~9급)
 - 1만원 (5급, 시간선택제‘가’급) · 7천원 (6급, 7급, 연구사, 시간선택제‘나’,‘다’급)
 - 5천원 (8급, 9급, 시간선택제‘라’,‘마’급)

※ 응시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전남도청 1층 농협에서 판매), 우편 접수시는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으로 대체 ※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⑧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 ⑨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 공증 첨부
 - 박사학위의 경우,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⑩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민간경력인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확인 후 제출)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추가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예시 : 주 20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⑪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p>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p>②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 ⑫ 자격(면허)증 등 1부(해당자에 한함)
- ⑬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별지 제10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자 유의사항》

- ①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②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③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 ④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⑤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사항

- 가. 전라남도인사위원회 및 전라남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 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 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 라.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한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응시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카.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전라남도 총무과 인재채용팀(☎ 061-286-3372)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 용 분 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감사행정수행·지원	감사관실	061-286-2243
공공보건의료	건강증진과	061-286-6021
사실조사전문요원(가급)	여순사건지원단	061-286-7885
사실조사전문요원(나급)		
도축검사	동물위생시험소	061-286-6110

참 고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감사행정 수행·지원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전라남도	감서관실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 ○ 사전 컨설팅 감사 법령 해석 등 ○ 감사 처분 요구 재심의 및 재조사 ○ 기타 감사 업무 관련 법률 검토 등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직문화 감수성(적응력, 소속감) ○ (직급별 역량) 전문성, 성실성, 협력성(팀워크지향), 적극성,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추진력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컨설팅 감사 법령 해석 등 법률적 전문지식 ○ 신속·정확한 고충민원 처리 수행 지식 ○ 보고서·계획서 등 문서작성에 요구되는 지식

응시 자 격 요 건	관련분야 : 감사행정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사법연수원 연수 기간 제외) 	

참 고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공공보건의료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전라남도	건강증진과(전남 무안군 소재)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 전문인력 교육훈련 · 공공의료 포럼 및 워크숍 등 개최 · 예산 및 행정업무, 홈페이지관리 · 기타 정책연구 등 수행지원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직문화 감수성(적응력, 소속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의료분야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관련 프로젝트 경험 ○ 공공보건의료분야의 연구수행 경험 및 연구계획서·보고서 작성 능력 ○ 보건의료 2차 데이터 분석 경험 및 지식
-------------	---

관련분야 : 공공보건의료	
응시자격요건	<p style="text-align: center;">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연구기관·공공병원·민간병원에서 보건 의료 관련 근무·연구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SAS, SPSS, R 등의 통계 프로그래밍 가능한 사람 ○ 행정, 예산업무 근무 경력자 <p>* 해당 전공분야 : 의학, 약학, 보건학, 간호학, 보건경제학, 보건경영학, 보건행정학, 사회학, 보건통계학, 기타 보건의료 관련 분야</p>

참 고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사실조사전문요원(가급)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에 따른 사실조사 총괄 담당 ○ 시군 사실조사요원 관리·감독·교육 및 신고·접수 총괄 ○ 명예회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사실조사 검토보고서 작성 등 ○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협상력, 정보관리능력, 상황판단 능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근·현대 사회·역사·문화 등에 대한 지식 ○ 조사 기획수립, 분석, 평가 등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지식 ○ 조사방법(인터뷰, 사실조사 등),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지식
-------------	---

관련분야 : 여순사건 사실조사 전문요원	
응시자격요건	<p style="text-align: center;">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과거사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서 역사, 조사·수사·감사, 언론, 법무, 인권, 노동, 사회 등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 및 사실조사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순사건 및 과거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정치, 사회, 역사, 법, 수사, 행정학 또는 이와 관련 계통의 학

참 고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사실조사전문요원(나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2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진술 청취, 관계 기관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등 진상규명 자료 수집·분석 실시 ○ 사실조사보고서 기초 자료(사건의 원인·과정·피해 등) 사전 검토·작성 ○ 시군 사실조사요원 관리·감독·교육 및 신고·접수 통계 처리 ○ 명예회복위원회 진상규명 조사 지원 업무 등 ○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협상력, 정보관리능력, 상황판단 능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근·현대 사회·역사·문화 등에 대한 지식 ○ 조사 기획수립, 분석, 평가 등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지식 ○ 조사방법(인터뷰, 사실조사 등),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지식
-------------	---

관련분야 : 여순사건 사실조사 전문요원	
응시자격요건	<p style="text-align: center;">경 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과거사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서 역사, 조사·수사·감사, 언론, 법무, 인권, 노동, 사회 등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 및 사실조사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순사건 및 과거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정치, 사회, 역사, 법, 수사, 행정학 또는 이와 관련 계통의 학

참 고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도축검사	지방수의7급(일반임기제)	3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 도축장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지도 · 검사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 처리 · 축산물 압류·폐기·회수 ·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여부 확인 · 가축·축산물 위생관리 관련 업무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직문화 감수성(적응력, 소속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전공 지식 ○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도축검사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